

제 1393 호
1988. 1. 22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영 정
편집인 : 공 보 관 서 장
전화 : 731-6111-3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회
전화 : 735-3337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87 공무원제안심사결과및시상제외 3

관세법시행규칙증거정령이첩시달 7

◎ 고 시

제 27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0

제 31 호 : 가축장전사업실시 11

제 32 호 : 광견병예방을위한방견단속 11

제 34 호 :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지소관할구역변경 12

제 42 호 : 쇠고기및돼지고기연동가격 13

제 43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3

이면계속

연									
	월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㉔	구 고 시	
	노원구제 3 호 : 도시계획사업 (종합의료시설) 시행허가	13
㉕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 제 1 호 : 하천점용허기	14
	한강관리사업소 제 2 호 : 하천제속점용허가	14
㉖	공 고	
	제 28 호 : 제 2 종천기공사면허영업정지처분	15
	제 33 호 : 개포택지개발사업지구환지계획변경인가및환지예정지변경지정	15
	제 36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6
	제 40 호 : 식품진흥기금분입출납명령관직인동수공고	16
	제 42 호 :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8
㉗	구 공 고	
	서대문구공고제 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에따른공람	19
㉘	사 령	

공 문 시 형

(관 인 성 략)

서 울 특 별 시

시정 J1226-7

(731-6151)

'88.1.22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87 공무원 제안심사결과 및 시상계획

'87 공무원제안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을 별첨과 같이 시달함.

첨 부 : '87 제안심사결과 및 시상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시장개발담당관 진결)

수신처 : 시 산하 계 기관

<p>'87 제안심사결과 및 시상계획</p> <p>1. 제안채택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건수: 120 건 ○ 채택: 12 건 13 명 (공동제안 1건) <p>* 채택 심사내용</p>		<p>안 1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상: 2 건 2명 • 장려상: 3 건 3명 • 노력상: 7 건 8명 (공동제안 1건) ○ 불채택: 108 건 (2차심사)
채택등급	제 안 내 용	
동 상	<p>○ 맨홀 시공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맨홀의 인상요인 발생시 기존 맨홀의 주경판 열고 상하부 천개를 맨홀위에 조립사용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철개팅을 제작하여 사용토록 개선 • 호 과: 공사기간 단축, 혼잡지역에서의 교통소통의 원활, 도로포장시에도 작업 병행 가능 및 안전사고 방지 • 제안자: 도로과 토목 7급 박종두 	
동 상	<p>○ 상수도 생산 및 시설물 유지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당수원지의 침전시 집수구조물인 트라프의 오리피스물 동결기에는 스티로폼로 막아서 트라프 상부로 월류시켜 집수토로 개선 • 호 과: 침전시 결빙으로 인한 구조물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트라프 보수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와 파빙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제안자: 팔당수원지 토목 7급 장석내 	
장 려 상	<p>○ 입찰업무 전산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입찰 집행업무를 주관, 제안기등의 수작업에서 컴퓨터에 의한 전산처리로 개선 • 호 과: 입찰업무의 신속, 공정, 정확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신뢰 행정구현 • 제안자: 종로구 시민봉사실 행정 5급 양기석 	
장 려 상	<p>○ 지출결의서 서식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름구매 및 공사계약 체결시 작성하는 지출결의서에 계약자의 계좌입금 기재란을 신설하여 사용토록 개선 • 호 과: 대금지출의 정확 및 신속처리와 업무절차 간소화로 사업자 불편해소 • 제안자: 단정하수처리장, 행정 7급 권오철 	

제 목	내 용
장 령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서 수발제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청 시민봉사실에 관할내에 있는 사업소함 설치 · 사업소본 문서도 본청 식민과 문서경계 차함으로 송부 · 구청 시민봉사실에서는 구청 새바울과 및 수도관리과의 기존 차함을 이용하여 1일 2회씩 판내의 동사무소와 사업소에 문서 수송토록 개선 · 효 과 : 문서전달의 신속, 정확, 보안상의 효과. 문서 사송원의 인력절감 및 교통비등 예산절감 · 제안자 : 시민과 행정 7급 이상호
노 령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 일제 조사시 누락된 기존 무허가 건물로서 항추관독된 건물에 대하여는 추가로 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별도 작성하여 기존 무허가와 똑같은 처리 부여 · 효 과 : 영세민의 적산권 안정도모와 피관독의 불필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제안자 : 행정과 행정 6급 박현호
노 령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세 특별징수 납입신고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주민세 특별징수 납입신고서 서식이면에 별도의 납입신고 사항을 신설 기재토록하여 은행에 납부하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토록 개선 · 효 과 : 은행에 주민세 납부후 별도로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던 원천 징수 의무자의 불편해소와 분류 및 상호 조사 불필요로 과세청의 업무량 감소 · 제안자 : 중구 사무과 행정 7급 이상길
노 령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생산포장제 (아스콘, 부순돌) 운반비의 실적항원과 공급방법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제의 운송을 전문 운송업자와 연간 단가계약하여 운반 · 공사 발주부서에서는 생산자책비와 운반비를 공급비에 포함 설계토록 개선 · 효 과 : 운반비 적정단가로 공사가 질감효과와 7km~10km 초과지역에도 자재의 공급범위 확대가능으로 시수입의 증대 및 설계능률의 향상 · 제안자 : 기술성사담당관실 토목 7급 신영호 시정개발담당관실 행정 7급 김병훈

채택 등급	제 안 내 용	
노 력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세외수입 징수 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이용수수료의 현행 은행 현금납부 제도를 증지 첨부 수납제도로 개선 · 효 과: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직원의 업무량 경감 · 제안자: 도봉구 기획감사과 행정 8 급 박우상 	
노 력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골분쇄장치(기)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의 시신을 화장한후 유골을 현행의 외철구로 분쇄하는 공정을 전자동 쇄골기를 개발하여 처리토록 개선 · 효 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작업시간의 단축 및 위생적인 화장업무의 수행 · 제안자: 중구 수도관리과 행정 7 급 박갑순 	
노 력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수집과 적환운반 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 수거를 현행의 수하차수거에서 소형차량으로 수거하여 소규모 적환장을 폐쇄하고 운반 중계시설에 전환하여 대용 차량으로 운반토록 개선 · 효 과: 시민면의 행정과 청소행정의 능률성 확보, 도시미관 조성과 시민보건위생 기여 및 청소인력 감축으로 인건비 절약 · 제안자: 청소과 행정 7 급 박정기 ○ 가격표시제 사무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표시제 일소의 관리를 위하여 대상업소에 대한 기본 과장과 보조카드를 제작 활용하여 지도점검 체제와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질차 및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효 과: 단속업무의 신속 정확 및 계속성 유지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 · 제안자: 물가지도담당관실 행정 7 급 최현창 	
<p>2.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상 특전 (제안규정안 25 조 제 2 항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규칙 제 23 조, 제 24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상: 7 급이하-특별승진(2명) · 장려상: 특별승급(3명) · 노력상: 특별승급(7전 8명) ○ 부상(제안규칙안 25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상: 각 1,000 천원 · 장려상: 각 500 천원 · 노력상: 각 300 천원 · 공동제안 1 건으로 저급 ○ 표창: 수상과 전원(동상 2명, 장려상 3명, 노력상 8명) 시장표창 		

(관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법무 33900-14

731-6156

1988.1.22

수 신 : 수신처 참조

재 목 : 관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이첩 시달

1. 관세 22700-2(88.1.4)호와 관련입니다.

2. 재무부로부터 관세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이 시달되어 기합시달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관세법시행규칙중 개정령 1부. 끝.

* 이 내용에 관한 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법무담당관 직결)

수신처: 서울특별시 전기관

○재무부령 제 1739 호

관세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7년 12월 31일
재무부장관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7 조제 1 항제 2 호가목중 "제 8514 호"를 "제 8518 호"로, 동호 나목중 "제 8515 호"를 "제 8528 호"로, 동호 나목중 "제 92 류"를 "세번 제 8519 호 제 8520 호, 제 8521 호, 제 8522 호, 제 8523 호, 제 8524 호 및 제 92 류"로 한다. 제 17 조제 3 항제 2 호가목중 "제 8514 호"를 "제 8518 호"로, 동호나목중 "제 8515 호"를 "제 8528 호"로, 동호나목중 "제 92 류"를 "세번 제 8519 호, 제 8520 호, 제 8521 호, 제 8522 호, 제 8523 호, 제 8524 호 및 제 92 류"로 한다. 제 17 조제 5 항제 1 호가목중 "제 8514 호"를 "제 8518 호"로, 동호나목중 "제 8515 호"를 "제 8528 호"로 동호나목중 "제 92 류"를 "세번 제 8519 호

제 8520 호, 제 8521 호, 제 8522 호, 제 8524 호 및 제 92 류"로 한다. 제 20 조제 1 항제 1 호중 "제 8514 호"를 "제 8518 호"로, 동항제 2 호중 "제 8517 호"를 "제 8531 호"로, 동항제 3 호중 "제 92 류"를 "세번 제 8519 호, 제 8520 호, 제 8521 호, 제 8522 호, 제 8523 호, 제 8524 호 및 제 92 류"로 한다. 제 20 조제 3 항중 "제 8702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화물전용의 것을 제외한다.)를 "제 8702 호 및 제 8703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제 8709 호"를 "제 8711 호"로 한다. 제 26 조제 1 항중 "제 8702 호의 1"를 "제 8703 호에 해당하는"로, 동조제 2 항제 3 호중 "제 3708 호"를 "제 3707 호"로, 동항제 4 호중 "제 3811 호"를 "제 3808 호"로, 동항제 5 호중 "제 4207 호 및 제 4821 호"를 "제 4810 호, 제 4811 호, 제 4823 호와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중 구번호 제 7607.20 호"로, 동항제 6 호중 "제 7332 호 및 제 7335"를 "제 7318 호 및 제 7320 호"로, 동항제 7 호중 "관세율표, 세번 제 8406 호, 제 8410 호

제 8411 호, 제 8415 호, 제 8417 호, 제 8418 호, 제 8422 호, 제 8423 호, 제 8462 호, 제 8463 호, 제 8465 호"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품목번호 제 8401.20 호와 관세 율표 세번 제 8407 호·제 8408 호·제 8409 호·제 8413 호·제 8414 호(가정용 의 것을 제외한다)·제 8418 호·제 8419 호·제 8421 호·제 8425 호·제 8426 호·제 8427 호·제 8428 호·제 8429 호(코드로올러를 제외한다)·제 8430 호·제 8431 호·제 8482 호·제 8483 호 및 제 8485 호"로, 동항제 8 호중 "제 8501 호, 제 8503 호, 제 8508 호 및 제 8511 호"를 "제 8501 호·제 8502 호·제 8503 호·제 8504 호·제 8506 호·제 8511 호·제 8514 호 및 제 8515 호"로, 동항 제 10 호중 "제 9007 호, 제 9008 호, 제 9010 호, 제 9011 호, 제 9012 호, 제 9013 호, 제 9017 호, 제 9018 호, 제 9019 호, 제 9020 호, 제 9025 호, 제 9026 호"를 "제 9006 호·제 9007 호·제 9009 호·제 9010 호·제 9011 호·제 9012 호·제 9013 호·제 9018 호·제 9019 호·제 9020 호·제 9021 호·제 9022 호·제 9027 호·제 9028 호 및 제 9405 호(시치라이트 및 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1]의 1. 기재공업란의 나의 본문 "제 8205 호, 제 8207 호"를 제 8207 호·제 8209 호"로, 나의(1)중 "제 8205 호, 제 8207 호"를 "제 8207 호

제 8209 호"로 나의(2)중 "본세율표 세번 제 8448 호의 1의 것"을 "통일 상품명 및 부호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부속서 품목번호 제 8466.93 호 및 제 8466.94 호의 것"으로 한다.
 [별표 3]의 나중 제 2 호·제 3 호 및 제 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공립직원훈련원 또는 학교에서 수입하는 교육용 필름(교육법 제 81 조에 규정된 학교와 기능대학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능대학에 한하여, 교여 설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위원회의가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관세 율표상 다음의 세번에 해당하는 것
 8401 8407 8408 8409 8410 8411
 8412 8413 8417 8418 8419 9421
 8423 8424 8425 8426 8427 8428
 8429 8431 8432 8433 8434 8435
 8436 8437 8439 8442 8443 8444
 8445 8446 8447 8449 8450 8451
 8452 8453 8456 8458 8459 8460
 8461 8462 8463 8464 8465 8467 8468
 8469 8471 8472 8474 8477 8479
 8501 8502 8504 8505 8508 8514
 8515 8517 8525 8526 8527 8528
 8529 8532 8533 8534 8535 8536
 8537 8538 8543 9005 9011 9013
 9014 9015 9016 9017 9022 9023
 9024 9025 9026 9027 9028 9029
 9030 9031 9032

3.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수입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용기기로서 판세율
 표상 다음의 세번에 해당하는 것
 9001 9011 9013 9014 9015 9017
 9022 9023 9024 9025 9026 9027
 9030 9031

4. 공업단지 및 의료위약지구의 병
 원설치계획이 의하여 건립하는 병
 원에서 수입하는 의료용구 및 시
 설기자재료선 판세율표상 다음의
 세번에 해당하는 것
 7311 8401 8414 8418 8419 8421
 8479 8705 9006 9011 9012 9016
 9017 9018 9019 9020 9022 9025
 9026 9027 9032 9402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
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규정에 의
 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
 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1.22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서대문구 북가좌동 307-7
 (우)청호주택 대창순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가. 위치 : 도봉구방학동 688번지
 나. 면적 : 2,466.20㎡
 다. 규모 : 연립 3층 3동 48세대
4. 사업시행기간 :
 1988. 1 ~ 1988.12

◎서울특별시고시제 31 호

가축검진사업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내에 기르고 있는 장소에 관한 검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동법시행규칙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다.

1988. 1. 22

서울특별시장

1. 목적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고 축산업발전 및 민수동통전염병 근절에 기여함.

2. 지역: 서울특별시

3. 내용: 젖소의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진

4. 실시기간: '88.3.1 - 10.31

5. 실시방법: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과 공수의에게 위촉 실시

6. 실시대상

○결핵병: 젖소 1세이상 전두수

○부루세라병: 착유하는 젖소

7. 기타사항

검진결과 양성 및 의양성 장소가 발생되었을 때는 농림수산부 예규 제 132 호에 의거 조치

◎서울특별시고시제 32 호

광견병예방을 위한 광견단속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견병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가 육외역시 배회하는 것을 단속하고자 동법시행규칙 제 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1. 22

서울특별시장

1. 목적: 광견병 만연의 막연방지

2. 대상: 육외역시 배회하는 개

3. 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4. 기간: '88.1.22-12.31

5. 방법: 포획하여 일정한 장소에 억류

6. 기타사항

가. 억류된 개는 구청별로 억류상황을 공고한다.

나. 억류된 개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 축주는 억류공고후 2일내에 광견병 예방주사필증을 지참 인수하여야 한다. (미필전은 예방주사 권한후 인수할 수 있음)
 다. 억류기간중 반환요구가 없는 개에 대하여는 가축당역관의 지시에 의하여 살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미필한 방견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40 조제 2 항에 의하여 고발됨.

◎서울특별시고시제 34 호
 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지소관할구역변경
 서울특별시송파구등 설치와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87.12.31 대통령령 12367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의 지소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직제(규칙제 1771 호)제 2 조제 4 항의 규정여의거 이통 고시한다.
 1988. 1. 22
 서울특별시장

변 경 전	변 경 후
가. 명칭: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동북지소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7 관할구역: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도봉구, 강동구	가. 명칭: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동북지소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7 관할구역: 성동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강동구, 송파구
나. 명칭: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서부지소 위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본동 1-103 관할구역: 구로구, 강서구, 마포구, 은평구	나. 명칭: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서부지소 위치: 서울특별시 공랑동 51-42 관할구역: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마포구, 은평구
다. 명칭: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남부지소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92-6 관할구역: 강남구, 관악구	다. 명칭: 서울특별시 농촌지도소 남부지소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역삼동 92-6 관할구역: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 서울특별시고시제 42 호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시행에 관한 규정(농림수산부 고시제 86-47 호, '85.8.22.) 제 8 조 및 제 9 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쇠고기와 돼지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1.22.

서울특별시장

- 1. 쇠고기 및 돼지고기 연동가격
쇠고기 연동가격(정육 500그램당) 3,400 원
돼지고기 연동가격(정육 500그램당) 1,300 원
- 2. 시행 일: 1988. 1.22. 부터

◎ 서울특별시고시제 43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주택건설 촉진법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32 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8. 1.22

서울특별시장

- 다 음 -

-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 2. 사업주체: ㈜우성건설대표 최승진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강동구 상일동 174 번지
나. 대지면적: 16,143.6㎡
다. 용도: 연립주택
라. 규모: 3층 9동 105 세대 및 부대시설
마. 건축연면적: 16,295.14㎡
 - 4. 사업시행기간: 88. 3.-89.5.
- 첨부: 설계도서(생략)

구 고 시

◎ 노원구고시제 3 호

도시계획사업(종합의료시설)시행허가

- 1. 건설부 고시 제 151 호(85.4.10) 및 건설부 고시 제 126 호(86.3.24)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승인된 서울, 상계택지개발사업 지구내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하고 이를 고시한다.
- 2. 관계도서는 도봉구청 도시경리과에

21-14

제 1393 호 시

보 1988. 1. 22

<p>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88. 1. 22 노 원 구 청 장</p> <p>다. 사업시행자 : 노원구 상계동 210번지일대 나.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공합의료시설) 명칭 : 북서울 백병원 신축공사</p> <p>다. 사업의규모 : 대지면적 6,700㎡ 건축면적 2,499㎡ 연면적 32,433㎡</p> <p>다.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중구저동 2가85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장 백낙조</p>	<p>다. 사업기간 : 88. 1.15 - 89. 5.30.</p>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auto; width: 80%;"> <p>사업소고시</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1호</p> <p style="text-align: center;">하 천 점 용 허 가</p> <p>하천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하천의 점용허가하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 1. 22.</p>
--	---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 가를 받 는 자	
						주 소	성 명
'88. 1. 13.	서울특별시 동구 광장동 177번지앞 하천	성 하천	252.28㎡	수상법당 설치	'88. 1.13 ~'89. 1.13	서울특별시 구 로구 은수동 12-2	대한불교 방 생법회 회장 이 건 호

<p>◎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 2호</p> <p style="text-align: center;">하 천 계 속 점 용 허 가</p> <p>하천법 제 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p>	<p>아래와같이 하천의 계속, 점용 허가하 였기 같은법 시행령 제 22조에 의거 이 를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8. 1. 22.</p>
---	---

허 가 년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 가를 받 은 자	
						주 소	성 명
1988. 1.15-	서울특별시 동구 광장동 188-2앞	성 하천	149㎡	사유지 보호	1988. 1. 1 ~1988. 12. 31.	서울시 성동 구 광장동 188-2	한강호원대포 정 채 욱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 제 23 호

제2종 전기공업사업 면허 영업정지 처분

서울특별시 전기공업업체 사후관리

지침에 의거 다음 제2종 전기공업사업
처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전
기공업사업법 제42조 의거 이를 공고
한다.

1988.1.22

서울특별시장

권허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내용
제 407 호	원전기공사	류 원	목석동 183-5	전기공업사업법 제 5 조 5 항 위반 (시공법위 초과 시공)	영 업 정 지 1 개월 88.1.15 ~ 88.2.14

◎서울특별시공고 제 33 호

개포택지 개발사업지구 환지계획 변경
인가 및 환지예정지 변경지정

1. 건설부 고시 제 76 호 (82.2.18) 의
거 택지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 승
인되어 사업시행중에 있는 개포지구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753
호 (87.12.7) 로 개포지구 일부 토지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변경 공람
공고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
리 사업법 55 조의 규정에 의거 환
지계획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 조

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88.1.22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명 : 개포토거 택지개발 사업
나. 면 적 : 6,494,276 평 (변경없음)
다. 변경내용 : 기존사업지구내 공공시설
및 택지위치 일부변경
라. 기 타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국 구획정리과, 강남구청(지
작계)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 소유자에게는
개발통지 할것이나 미수령 되는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이 공
고로 갈음한다 (관계조사 생략)

◎서울특별시공고 제 36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
 1. 서울특별시가 결정·적용승인한 다음
 가. 사업개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사업
 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한다.

사업시행지	사업종류및사업명칭	규모	착공	준공	결정고사 자	지적고사 자
수유 2 동 323-18 의 10 필지	도시계획사업(도로) 수유 2 동 268-318 번지 도로개발공사	B=6 m L=140 m	88.3	88.12	서고시 제 89 호 (72.6.30)	서고시 제 89 호 (72.6.30)

나.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강
 다. 사용도는 수용합토지(전몰조서) : 생략
 라.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아. 위치도 및 계획경면도 : 생략
 바. 토지(건물)조서 및 도면은 도량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

1988.1.22
 서울특별시강

◎서울특별시 제 40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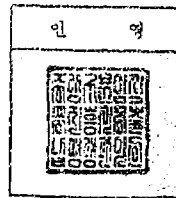
식품진흥기금본인출납명령관리인공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및 보건사회부 훈령 제 520 호 (87.3.
 9) 에 의한 서울특별시 보건사회부소
 관 본업식품진흥기금출납 명령관리 직
 인을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조 등록하고 동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한다.

1988.1.22
 서울특별시강

직 인 품 록 조 서

회 제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 (청소) : 중랑구청
 직 명 : 중랑구 본업식품진흥기금출납명령관
 사용계시일 : '88.1.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차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 (청소) : 노원구청 직 명 : 노원구 분업식품기금출납명령관 사용계시일 : '88.1.</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차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 (청소) : 양천구청 직 명 : 양천구 분업식품기금출납명령관 사용계시일 : '88.1.</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차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 (청소) : 서초구청 직 명 : 서초구 분업식품기금출납명령관 사용계시일 : '88.1.</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p style="text-align: center;"><u>직 인 등 록 조 서</u></p> <p>회 차 명 : 식품진흥기금 관서명 (청소) : 송파구청 직 명 : 송파구 식품기금출납명령관 사용계시일 : '88.1.</p>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서울특별시공고 제 42 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및
관계도면 공람

1. 하수도법 제 6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시장의 인가
 를 받아 시행한 하수도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및 공고
 한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 공고
 로 갈음한다.

1988. 1. 22
 서울특별시장

공람 및 공고개요

1. 사용개시년월일: 별첨조서 참조
 2. 배수구역: 별첨조서
 3.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위치
 : 영등포 6 가 62 주변의 3 개소 하수도
 공사의 12 건
 4.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또는 분류식의 구분: 합류식

공고 및 공람개요

연번	위치 (공사명)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 월 일	배수구역	구 별
1	영등포 8 가 62 주변의 3 개소 하수도공사	D= 450, L=592.5 m	'87.12.30	안양천유안	합류식
2	신길 6 동 1551-1494 간 의 3 개소 하수도공사	D= 900, L= 165 D= 700, L= 92.5 D= 600, L= 32.5 D= 450, L= 207.5	'87.12.30	도림천유안	"
3	신길 7 동 2401-2064 간 하수도공사	D= 900, L= 35 D= 800, L= 92.5 D= 450, L= 80 D= 350, L= 432.5	'87.12.30	"	"
4	대림 2 동 1075 번지 주변 의 1 건 하수도공사	D= 450, L= 490	'87.12.30	"	"

연번	위 치 (공사명)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 월 일	배수구역	구 별
5	신길 1 동 120-113 간 하수도공사	D=500 L=312.5 D=450 L=132.5	'87.12.29	한강 좌안	합류식
6	신길 5 동 355 번지의 2 개소 하수도공사	D=600 L=122.5 D=450 L=405 D=300 L=12.5	'87.12.30	도림천우안	"
7	대림 2 동 859-1033 간 하수도공사	D=450 L=152.5	'87.12.30	"	"
8	당산 3 가 385-6, 387-7 간 도로정비공사	D=450 L=252.5	'87.10.29	안양천우안	"
9	영등포 1 가 81-40 의 5 간의 2 개소 도로정비 공사	D=600 L=95	'87.12.23	도림천우안	"
10	신길 1 동 458-57 번지 주변 도로정비공사	D=600 L=205 D=450 L=485	'87.12.28	한강 좌안	"
11	영등포 1 동 520 번지 주 변 도로정비공사	D=600 L=451 D=450 L=134.5	'87.12.21	도림천우안	"
12	양평 6 가 74-87 주변외 1 개소 도로정비 및 가각정비공사	D=1,000 L=30 D=300 L=127.5 D=600 L=42.5 D=450 L=387.5	'87.12.24	산양천우안	"
13	대림동 750-740 번지간 도로표장공사	D=800 L=147	'87.12	도림천우안	"

구 공 고

◎서대문구공고제 5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변경에 따른 공람

1. 서대문구 고시 제 22 호('87.6.
II)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허가된 서울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와 서울특별시
별시 조례 제 212 호('86.12.19)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허가 변경하
고사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관제도
서울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

21-20 제 1393 호 시

보 1988.1.22

<p>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 으니 본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공람 기간내에 제출하시거 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1988.1.22 서대문구청장</p> <p style="text-align: center;">공 랑 내 용</p> <p>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 연희동 55-1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서울외국 인학교 교사증축</p>	<p>다. 사업시행면적: 54,800㎡ 라. 건물면적: 기존 19,760.24㎡ 금회 3,271.11㎡(중 514.31㎡) 계 23,031.35㎡</p> <p>마. 사업시행자 서대문구 연희동 55번지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지재단 대표이사 고일선</p> <p>바. 사업의 준공예정일: '88.12.30</p> <p>가. 사용토지 및 건물소유자 재단법인 서울외국인학교 유지재단 소유</p> <p>자. 계획설계도서: 별첨(생략)</p>
--	--

사 령

◎ 1988년 1월 13일자		령제 1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심종석	주책기획과 지방건축기사보	총무과	지방건축기사보시보
◎ 1988년 1월 16일자		령제 1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고광명	은정구	내무국	지방행정주사
박영근	도봉구	"	"
이양희	동대문구	"	"
◎ 1988년 1월 19일자		령제 2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우명규	국립대학원 과전 ('88.1.13-'89.1.9)	내무국	지방시설기장

성 명	발 명 사 항	원 부 서	직 급
안 석 환	내무국근무 국방대학원 파견('88.1.19- '88.1.9)	석재문부청장	지방부이사관

㉠ 1988년 1월 15일자

별제 21 호

성 명	발 명 사 항	원 부 서	직 급
류 계 곤	지방행정사무관에 추서함	심 동 구	지방행정주사

㉡ 공무 국외여행 명령사항

의 행 자			목 적	의 형 국	의 행 기간	경 비
소 속	직 급	성 명				
건설 행정과	지방기제 기사	조 경 태	건설장비구매, 조전확 인 및 프가기술습득	이태리 독 일	88.1.25- 2.3 (10일간)	계약금액 부담 (서비)
동부건설 사업소	지방기제 기사코	권 성 선				
남동건설 사업소	지방 기제장	김 영 일	아시아 생산성기구 주최 상수도분야 공 무원 연수 참가	일 본	88.1.31- 2.27 (28일간)	아시아 생산 성 기구부담 (별도국제환 액가금 55만 :서비)
급수과	지방로목 기차	이 연 배				

< 정 점 사 항 >

○ 시보 제 1390 호('87.12.31자)의 조제 제 2233 호중 <별표 2: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표기 사용료에 대하여 "공원묘지: 반봉분형 1기당(3.25제곱미터)"를 "공원묘지: 반봉분형 1기당(8.25제곱미터)"로 바로잡음